

2018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18년 4월 1일(목요일) 14:00 ~ 15:40

○ 장소 : 대학본부 8층 회의실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위원장 선출 4. 위원장 개회 선언 5. 안건상정 6. 폐회

○ 참석자 : 고동호, 박주미, 이철로, 이동호, 김학용, 손재권, 한길석, 한상욱, 조호성, 장환석, 박미순, 박진, 조춘신 위원

○ 불참자 : 김재민, 김세봄 위원

○ 상정안건

- 위원장 선출

-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간 사 :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진철)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마친 후)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8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 중 부총장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위 원 : 교무처장님을 추천합니다.

(손재권)

위 원 : 한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욱)

간 사 : 일반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으

(권진철) 셔야 하므로 교무처장님이 하시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전원) 동의합니다.

간 사 :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교무처장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

(권진철) 시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인사말씀

(고동호)

임시위원장 : 회의 진행에 앞서 신규 위원인 한길석 교수님은 발전지원재단의 추천을 받

(고동호) 았으며 전 고규진 위원의 후임자이며, 조호송 교수님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

았으며 전 반상진 위원의 후임자입니다.

신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 원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한길석)

위 원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조호성)

임시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13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고동호)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고동호) 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
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 원 : 한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재권)

임시위원장 : 한길석 위원님 추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
(고동호) 님들의 추천과 재청으로 한길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고 한길석 위원님의 추천과 재청으로 한길석 위원
(고동호) 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 위원장님의 수락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호)

위원장 : 인사말씀
(한길석)

위원장 : 의사일정에 따라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을 상정
(한길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본부장: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최용재)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제안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길석)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회의 전에 교수회와 논의하여 많은 조율을 한 것에 대해서
(한상욱) 감사를 드립니다.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주요 변경사항 수정 1페이지를
보면 퇴직교수의 경우 8월에 8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른 일반 교수들과 같이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정기획본부장: 선급금을 지급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나 퇴직 예정이신 교수님들이 결과보고서를
(최용재) 내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신 교수님들
의 지급방법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8월에 전액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 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학술연구트랙에서 선급금은 5월, 8월, 10월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기성금은 익년 2월에 약 1,000만원을 일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유독 학술연구트랙만 따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술연구트랙의 선급금도 8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약 170만원씩 월별로 지급하고, 기성금도 1월, 2월에 나누어서 약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정기획본부장: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재)

위 원 :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매달 약 2백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나 학술연구트랙을 선택

(한상욱) 한 경우 3개월에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이 교수님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첫 해에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170만원이라도 나누어서 봉급성으로 드리는 것이 그 분들이 가계를 계획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기획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재)

위 원 :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과금은 정년퇴임 하신 분들도 연말에 일괄로 지급하게 됩니

(고동호) 다. 정년퇴임한 일반 교수님들과 같이 계산을 해서 똑같은 시기에 지급할 수 있으면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과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퇴직 후에도 퇴직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길석)

위 원 : 무기계약직 45명, 수입대체직원 50명, 미화업무 하시는 분까지 하면 200명 정도

(박미순) 가 정규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직원으로 생각하여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기획본부장: 신규 대학회계직으로 발령나신 분들은 노사협약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지

(최용재) 급대상에서 제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과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총무과, 재무과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해에는 예산이 확정되어 반영되기 어려우며,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 원 : 당연히 이 분들도 직원이므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순)

위원장 :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검토가

(한길석) 필요한 지에 대해 제안자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본부장: 시기상으로 검토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올 해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가 끝나서
(최용재) 확정 통보를 곧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대학회계직 전환하신 분들은 노사
협약서에 교연비는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위 원 : 작년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분들은 올 해 준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박미순)

위원장 : 박미순 위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안전상정을 통
(한길석)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 오늘 안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
는 것은 학술연구트랙 비용지급에 관한 문제인데 더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학술연구트랙에서 1차년도 중간실적보고서, 결과보고서는 12월에 제출하고 2차년
(한상욱) 도 4월에는 연차계획서를 제출하는데 12월에 2차년도 연차계획서도 같이 제출한
다면 교수님들이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
떨까 싶습니다.

위 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하
(김학용) 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2015년도에 결과보고서를 3쪽에서 10쪽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님들이 많
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양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라
며, 이공계는 12쪽으로 인문사회계열은 15쪽으로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정기획본부장: 교육부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사항이라서 재조정을 하려면 재협의를 필요합니다.
(최용재)

위 원 : 의미가 있고 유용하면 100쪽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일을 하는 데
(한상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으로 업로드 하는
방법 등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본부장: 규정에 심사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출력물로 실무심사가
(최용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쉬운 방법은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재협의를 된다면 인문사회계열 결과보고서 페이지가 20페이지입니다. 다른 계열과
(고동호) 마찬가지로 15페이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 원 : 결과보고서 작성 시 줄간격, 폰트 등 아무런 작성 기준이 없으며, 이 결과보고서를
(조호성) 작성하는 것이 뿌듯하지 않고 쓸 데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
수님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 새로 생긴 학술연구트랙의 경우 주무 부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철로)

재정기획본부장: 산학연구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에서
(최용재) 실무심사를 거쳐 오는 자료에 대해 심사를 하면 됩니다.

위 원 : 산학연구처에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이철로) 됩니다.

위원장 : 우선 논점을 학술연구트랙의 지급시기, 업무분장, 결과보고서의 양 부분에 맞춰
(한길석)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학술연구트랙에 관련된 논의는 이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석) 지금 세가지와 관련된 내용은 제안자께서 보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우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정이 가능한 기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은 221억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김학용) 알기로는 일단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했을 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으며,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박미순 위원님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대학회계직 전환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반영에 관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석)

위 원 : 산학연구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연간 200만원을 지급해주는 자기주도기본활동학술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기본활동학술비를 교연비와 합산하여 공지하거나 개별 항목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출장이나 회의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기 주는 비용인데 증빙서류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처럼 보고서를 내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이 비용도 연구비이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을 따라야 되므로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원 : 재원은 산단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산단에서 본부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처럼 교수님들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원 : 좋은 말씀입니다. 자기주도기본활동학술비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포함시켜
(이철로) 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산단에서 대학회계로 진출하는 비용은 대응자금, 공공요금
이 두가지 밖에 진출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 원 :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동호) 교육영역을 보면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특강의 경우 졸업생에게 교육을 하
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생지도의 특강 및 세미나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논
의가 되었는지요?

재정기획본부장: 여기서 말한 특강은 정규 수업이 아니라 수업 과정과는 별개의 특강입니다.

(최용재)

위 원 : 네 알겠습니다.

(고동호)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길석)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오늘의 안건인 2018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하여

(한길석)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학술연구트랙 중 지급시기 조정, 연구
결과보고서, 업무분장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원안가결을 할 것인지,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가
결을 할 것인지 성안을 해주시고 나온 성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 원 : 원안대로 하되 연구학술트랙 중 다루었던 사항들을 실무진들에게 위임하여

(고동호)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원 : 실무부서에 위임하는 내용을 학술연구트랙에서 지급시기를 매월로 지급하는

(한상욱) 부분과 중간실적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기성금을 1,2월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부분, 결과보고서의 쪽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원안을 성안하
입니다.

위원장 : 그러면 원안을 가결하되 연구학술트랙 중 지급시기, 연구결과보고 내용 재검토는

(한길석) 실무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들 : 재청합니다.

위원장 : 학술연구트랙에 관하여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한길석)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중

(한길석) 결하고,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석)

위원들 : (전원 거수)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석) (의사봉 3타)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 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제6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한상욱, 장환석, 박진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이번에도 동일하게 세분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동호)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길석)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한상욱, 장환석, 박진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성일 : 2018. 4. 23.(월)

위원장 : 한길석 (인)

간사 : 권진철 (인)

기록자 : 강현창 (인)